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14.1.14.개정전)

[별표12]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14.1.14. 개정전)

[별표13]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14.1.14. 개정전)

[별표14]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14.1.14. 시행)

[별표12]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14.1.1.시행)

[별표13]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14.1.1. 시행)

[별표14]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2. 도시·군 관리계획에 위임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14.1.1. 시행)

[별표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물에 한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가.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건축법 제12조(용도지역의 세분)

-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생략>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생략>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생략>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건축법 시행령 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② 허가권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 ③ 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 ⑤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는 그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구역)

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